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에서 근무할 청년인턴(2차)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1. 선발예정인원 (총 8명)

○ 총 괄

지원코드	채용분야	선발인원	근무지
인턴 A	행정홍보 전산통계	1명	부산해양경찰서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293)
인턴 B		2명	울산해양경찰서 (울산시 남구 신선로 20)
인턴 C		2명	창원해양경찰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40)
인턴 D		3명	해양경찰정비창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605번길 93)

※ 하나의 응시분야만 지원 가능(다른 분야 중복 지원불가)

가. 근무조건

-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6개월 (세부사항은 조정가능)
 - ※ 합격자 검증 절차 등으로 계약시작일은 6월 17일 예정이나, 변경 될 수 있음
- (보 수) 월 2,060,740원
 -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본인부담 보험료는 보수에서 공제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 출퇴근 지원 및 숙소 지원 없음

나.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채용분야	주요업무
인턴 A	행정홍보 전산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행사, 기록물 관리 등 행정 업무지원 ▶ 정책홍보, 디지털콘텐츠 제작, 사회관계망 운영 등 홍보업무 ▶ 전산·통계, 데이터정보 등 관리지원
인턴 B		
인턴 C		
인턴 D		

※ 합격자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고려 주요업무는 계약 시 세부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 이상 : 3세 연장

- 「해양경찰청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규칙」 제17조(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해양경찰청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규칙 제1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11①)

-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선발예정 분야의 응시자격 요건이 공고문에 제시된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소극적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정요소마다 “상·중·하”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선발,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선발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면접시험 평정요소 】

- ①(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적인 태도, ③(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윤리·책임) 청년인턴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등

4. 시험 일정

- 채용공고 : 2024. 5. 3.(금) ~ 5. 16.(목)
- 원서접수 : 2024. 5. 13.(월) ~ 5. 16.(목)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4. 5. 27.(월) 예정
- 면접시험일 : 2024. 5. 30.(목) ~ 5. 31.(금) 예정
 - ※ 면접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4. 6. 4.(화)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고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합격자 및 근무부서 특수성에 따라 신원조사 실시 예정이며,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제출기간 : 2024. 5. 13.(월) ~ 5. 16.(목) 18:00

* 전자우편 접수는 마감일(24. 5. 16.)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개별 발송 예정)

- e-mail 제출서류는 자필 서명하여 반드시 PDF(1개 파일로 스캔)로 제출,

※ mail 제목은 “성명(지원코드)[예 : 홍길동(인턴A)]”으로 기재

원서 접수기관	일반전화	이메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051)663-2416, 2616	wlsdlfc@korea.kr

다. 서류제출 주의사항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 접수한 메일로 접수확인 회신 예정으로 본인 메일로 송부 필수
- 제출 필요 서류 누락 및 서명이 없을 경우 미제출로 간주하여 안내 없이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우대요건 및 가점요건 관련 각종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부분 불인정 처리

6. 제출서류 안내

가. 응시원서 접수 시 필수 제출서류 * 주의사항 필독

- ①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별지 1호 서식) 1부
- ② 자기소개서 (별지 2호 서식) (필수제출) 1부
- ③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3호 서식) (필수제출) 1부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4호 서식) (필수제출) 1부
- ⑤ 주민등록초본(남여 모두 제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제출) 1부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주의사항>

- 제대군인은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현 주소지만 나오도록 발급(주소지 이전 사항이 모두 나올 필요는 없음)
-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기되도록 발급(000000-0000000)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제출하는 증빙서류

-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별지 5호 서식) (필수제출) 1부
- 가족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6호 서식) (필수제출) 1부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나'항목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6. 유의 사항

-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청년인턴 채용일정 등 고려 하나의 기관만 지원 가능
- 면접에 따른 경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사정에 따라 면접 장소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051-663-2416, 26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제1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년인턴 2차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생년월일	성명	연락처
※ 담당자 기재					

제출 서류에 ✓ 표시 후 아래의 순서대로 1개의 PDF 파일로 스캔

※ 파일명 예시: "성명(지원코드)[예 : 홍길동(인턴A)]으로 기재

목 록	제출	미제출
<필수사항>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2. 자기소개서 1부		
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남녀 모두 제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6.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별도 제출	
7. 가족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응시번호	미기재	성명		지원코드		채용분야	
------	-----	----	--	------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등 자유롭게 기재

2024년 월 일

작성 자

(서명)

<별지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관할</u> <u>출입국·외국인청</u> <u>(사무소)</u>	공무원 채용 관리	<u>복수국적 여부 조회에</u> <u>필요한 사항</u>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u>개인정보(자격증</u> <u>·경력·학위·</u> <u>외국어성적·상훈</u> <u>·장애인여부)</u> <u>확인기관</u>	<u>근로자 채용</u> <u>관리</u> <u>(자격확인)</u>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 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3) 고유식별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
- (4)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고유식별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생년월일	성명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2024 . . .

성명 : (서명)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에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서식 제7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제출서류가 원본일 경우 신청가능>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